

# 정책/POLICY BOARD OF EDUCATION OF MONTGOMERY COUNTY

관련 항목: GCA-RA  
책임 부서: Board of Education

## 윤리(Ethics)

### A. 목적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와 관련된 모든 관계자에게 최고 수준의 윤리적 행동을 촉진하고 교육위원회(Board of Education-Board) 의원과 MCPS 공직공무원과 교직원의 공정성과 독립적인 판단에 대한 공신력 최고 수준으로 보장하며, MCPS 교직원에게 윤리 관련 문제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 B. 이슈

Maryland 주(이하 "주")는 교육위원회 의원과 MCPS 공직공무원 및 교직원의 공정성과 독립적 판단에 대한 공신력을 최고 수준으로 보장하도록 지역 교육위원회에 이해충돌, 재정공개, 로비에 관한 적절한 조항을 도입하도록 지시하고 승인하였습니다.

### C. 정의

본 정책의 용어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를 갖으나, 다음에 명시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

1. *기업(Business entity)*은 일반 또는 합자회사, 개인영업, 합작사업, 비법인 단체 또는 기업, 기관, 신탁, 재단 또는 모든 영리 또는 비영리 기관을 의미합니다. 기업에는 정부기관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선거위원회(Board of Elections)*는 Montgomery 카운티 선거위원회를 의미합니다.
3. *보수(Compensation)*란 본 정책의 적용을 받는 개인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형태에 관계없이 고용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돈 또는

가치 있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본 정책의 섹션 H {로비 공개/Lobbying Disclosure}의 취지상, 로비가 개인 업무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은 다른 업무에 할애한 시간과 비교하여 로비에 할애된 시간을 기준으로 비례 배분된 금액을 뜻합니다.

4. *함께 비즈니스를 한다(Doing business with)*는 것은 다음을 뜻합니다—
  - a) 단일 다수의 거래로 연간 5,000 달러 이상의 학교 시스템 자금이 투입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혹은 협상 중인 경우
  - b) 학교 시스템의 권한에 종속된 경우; 또는
  - c) 본 정책의 섹션 H 로비 공개에 의거하여 로비스트로 등록된 경우
5. *고용인(Employee)*은 교육감을 포함한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구의 모든 고용인입니다.
6. *금융이자(Financial interest)*의 의미는—
  - a) 소유자가 지난 3 년 이내에 수령했거나 현재 수령 중이거나 향후 수령할 자격이 있는, 연간 1,000 달러를 초과하는 이자의 소유권, 또는
  - b) 공직공무원(official) 또는 공직공무원의 배우자가 사업체의 지분을 3% 이상 소유하거나, 혹은 소유권을 나타내거나 소유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유가증권의 소유권.
7. *선물(Gift)*은 형태에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적절하고 합법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물은 주 또는 현지 법률에 따라 규제되는 정치 캠페인 후원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D.6.d 의 예외 참조)
8. *집 주소(Home address)*는 개인의 주된 집 주소, 그리고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주 법에 따라 명시된 두 번째 집 주소를 의미합니다.
9. *직계 가족(Immediate family)*이란 배우자 및 부양 자녀를 의미합니다.
10. *이자(Interest)*는 이는 보고 기간의 상시 동안에 저당여부나 상태에 무관하게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공동 또는 개별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유지하여 취득하는 법적 또는 공정한 경제 이자입니다. 이자에는 다음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a) 개인 대리인, 개인 대표, 대행인, 관리인, 신탁자 또는 신탁자의 자격으로 보유하는 지분 (소유자가 해당 주제에 대해 공평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 한);
- b) 금융 기관의 정기 또는 요구불 예금에 대한 이자;
- c) 보험사가 종신 또는 기타 정해진 기간 동안 일시금 또는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보험 또는 기금 정책 또는 연금 계약에 대한 이자;
- d) 국세청에서 국세법에 따라 자격 요건을 갖춘 신탁으로 인정되었으며, 25 명 이상의 참가자가 있는 연금 또는 이익 공유 플랜의 일부를 구성하는 공통 신탁 기금 또는 신탁;
- e) 연방세법에 따른 대학 저축 플랜; 또는
- f) 뮤추얼 펀드 또는 교환 거래 펀드가 주로 개인의 정부 기관에서 규제하는 특정 부문 또는 분야의 주식 및 지분 보유로 구성되지 않는 한, 전국적인 규모로, 또한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뮤추얼 펀드 또는 교환 거래 펀드.

11. 로비활동(Lobbying)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a) 이 정책에 정의된 선물 또는 일련의 선물에 대해 1년 동안 500달러 이상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공직공무원의 공식적인 행동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학교 관계자와 소통하는 행위.
- b) 공식적인 활동 결과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다른 사람에게 공직공무원과 소통하도록 권유하는 명시적인 목적을 가진 활동에 관여하며, 해당 연도 동안 이 활동을 위해 300달러 이상을 지출하는 경우.

12. 로비스트(Lobbyist)란 본 정책의 섹션 H에 따라 로비 활동과 관련된 비용을 등록하고 보고해야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13. 공직공무원 또는 MCPS 공직공무원(Official or MCPS official)는 교육감을 포함하여, 교육위원회의 각 의원, 교육위원회 직원, 혹은 특정 MCPS 공직공무원 또는 특정 직원을 의미합니다.

- 14. *위원단(Panel)*은 위원회의 윤리 위원단(Board Ethics Panel)을 의미합니다.
- 15. *개인(Person)*에는 개인과 기업 전체를 포함합니다.
- 16. *적격친척(Qualified relative)*은 배우자, 부모/후견인, 자녀 또는 형제/ 자매입니다.
- 17. *준정부기관(Quasi-governmental entity)*은 주 법령에 의해 설립되어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또한 전체 또는 일부를 주 정부로부터 지원받지만, 사설로 관리되는 기관을 뜻합니다.
- 18. *교육구(School system)*는 교육위원회가 승인한 교육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 19. *권한에 따른다(Subject to the authority of)*는 의미는 교육위원회가 기업체를 감찰하거나 교육구 정책이 기업의 경영에 현저한 권한을 갖거나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D. 이해관계 상충(CONFLICTS OF INTEREST)**

1. 참여

- a) 교육위원회 정책 또는 MCPS 규정이 승인하고 있거나 행정, 행정적 의무의 실행이 문제의 처분 또는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직공무원은 다음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 (1) 해당 공직공무원이 인지하고 있는, 공직공무원 또는 공직공무원의 적격 친인척과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사안; 또는
  - (2)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모든 사안:
    - (a) 공직공무원과 직접적으로 재정적인 이해관계가 있고 공직공무원이 이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기업 실체;
    - (b) 공직공무원 또는 공직공무원의 적격 친척이 공직공무원(officer), 관리자(director), 이사(trustee), 파트너(partner), 또는 직원/고용인(employee)인 기업 실체;

- (c) 공직공무원 또는 공직공무원의 적격 친척이 장래 고용을 위하여 협상 중이거나 고용의 거점을 마련하였고 이에 대하여 공직공무원이 알고 있는 기업 실체;
  - (d) 해당 계약이 해당 공직공무원의 사적 이익과 학교 시스템, 또는 교육위원회 직무 간에 충돌을 초래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될 수 있는 경우, 학교 공직공무원 또는 공직공무원이 알고 있는 한, 공직공무원의 적격 친인척이 이미 계약한 사업체;
  - (e) 공직공무원이 직접적으로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기업이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 시스템과 사업을 하는 기업을 소유하고 있고, 만약 공직공무원 또는 공직공무원이 양쪽의 직접적인 재정적 이해관계를 알고 있다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 (f) 기업 전체는—
    - (i) 공직공무원이 경제적 가치와 관련하여 공직공무원의 채권자 또는 의무자 또는 공직공무원의 적격 친인척임을 알고 있는 경우; 그리고
    - (ii) 채권자 또는 의무자로서, 공직공무원 또는 공직공무원의 적격 친인척의 이익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
- b) D.1.a 항에 따라 참여 자격이 박탈된 공직공무원은 분쟁의 본질과 정황을 공개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참여하거나 행동할 수 있습니다—
- (1) 자격 박탈로 인해 교육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는 정족수 미달이 되는 경우;
  - (2) 결격 공직공무원이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 또는
  - (3) 결격 공직공무원만이 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
- c) 만약 위원단의 견해에 따라 참여를 승인할 경우, section D.1.a 의 금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d) 교육위원회 의원이 아닌 직원 또는 공직공무원로서 이 섹션에 따라 적용받거나 대상이 되는 전직 규제 로비스트는, 전직 규제 대상 로비스트가 과거에 보수를 받고 다른 측을 지원하거나 대리한 적이 있는 경우, 전직 규제 대상 로비스트 등록이 종료된 후 1 년 동안 교육위원회 의원 이외의 직원 또는 공직공무원로서 사건, 계약 또는 기타 특정 사안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고용과 금융적 이익

- a) 교육위원회 정책 또는 MCPS 규정에 이해관계가 포함되어 있거나 고용이 이해 충돌을 일으키지 않거나 이해의 상충으로 보여지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 공직공무원은 다음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 (1) 다음과 같은 법인에 고용되거나 해당 법인에 재정적 이해 관계가 존재 —

- (a) 학교 시스템 또는 교육위원회의 권한에 따름; 또는
- (b) 학교 시스템 또는 교육위원회와 협상 중이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 (2) 해당 공직공무원의 판단의 공정성 또는 독립성을 저해하거나, 학교 시스템 내 직원으로서의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정기적으로 맡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지장을 줄 수 있는 시간 및/또는 에너지를 요구하거나, 고용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어떤 식으로든 맡은 업무와 상충되는 기타 고용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 b) 섹션 D.2.a의 금지 사항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1) 교육감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공무원으로, 교육위원회 정책이나 MCPS 정책으로 허용되어 사적 고용이나 이해관계가 이해충돌이나 외관적 이해충돌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또는
- (2) 규정 및 법률의 다른 조항에 따라, 교육위원회 의원 선서 당시 보유한 재정적 이해관계 또는 고용과 관련하여 해당 재정적 이해관계 또는 고용이 교육위원 의원 후보자 등록증과 함께 제출한 재정 공개 명세서에 공개되어 있는 경우; 또는

- (3) 고용이 이해 상충을 일으키지 않거나 이해 상충으로 보이거나 재정적 이해관계가 공개되지 않는 경우, 위원단(Panel)의 의견에 따라 허용되는 고용 또는 재정적 이해관계.

3. 퇴직

전직 공직공무원은 소송, 계약 또는 이 공직공무원이 현저히 참여한 교육구가 관련된 특정 문제에 대하여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구 외의 다른 단체에서 보수를 받고 도움을 주거나 대표할 수 없습니다.

4. 조건부 수당

공직공무원은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구에 관련된 문제를 통하여 조건부 보수를 받기 위하여 다른 단체를 돕거나 대표해서는 안 됩니다.

5. 지위를 통해 얻는 이득

- a) 공직공무원은 공직공무원의 직무의 일부이거나 추가 보상 없이 교육위원회의 의원이 통상적이고 관례적으로 수행하는 업무가 아닌 한, 해당 공직공무원의 사적 이익, 또는 타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혹은 특정인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 계약의 수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공직 또는 공적 지위의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b) 특정 정규 로비스트 또는 로비활동 기관의 보상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누군가를 위한 청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주도해서는 안 됩니다.
- c) 추가적 보수 없이 교육위원회 의원의 일반적이고 관습적인 서비스의 실행은 업무 또는 공적 위치를 사용한 권력 남용이 아닙니다.
- d) 공직공무원이나 교육위원회 의원은 누구도 주 또는 지역 법률에 따라 규제되는 기부금 모집을 위해 공공 자원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추가적으로, 교육위원회 의원이 아닌 공직공무원은 주 또는 지방 법률에 따라 규정된 바에 따라 공직공무원의 직함을 사용하여 정치 기부금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6. 선물

- a) 공직공무원은 청탁을 위한 어떤 선물도 받지 않습니다.
- b) 공직공무원은 개별적 로비스트로부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선물을 청탁하거나 청탁의 기회를 만들 수 없습니다.
- c) 공직공무원은 인지하는 한, 직간접적으로, 해당 공직공무원이 알거나 알 만한 상황에 있는, 다음에 해당하는 개인에게서 선물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 (1) 학교 시스템 또는 교육위원회와 비즈니스를 하고 있거나 비즈니스를 모색하고 있는 경우;
  - (2) 학교 시스템의 권한에 따르는 경우;
  - (3) 해당 공직공무원의 관할권 내에 있는 사안과 관련된 로비스트인 경우;
  - (4) 공직공무원의 학교 시스템 직무 수행 또는 미수행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일반인과 구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실질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 (5) 카운티 또는 지방 자치 단체를 대표하는 업무에만 종사하는 협회 또는 협회를 대신하여 활동하는 단체인 경우.
- d) 이 하위 섹션의 6.c 항에 관계없이, 공직공무원은 다음을 수락할 수 있습니다 –
  - (1) 기부자 또는 후원 단체의 동석 하에 소비되는 식사 및 음료;
  - (2) 금전적 가치가 크지 않은 기념 선물 또는 상;
  - (3) 개인당, 연간 20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요구하지 않은 선물 또는 명목상 가치가 있는 사소한 물품;
  - (4) 회의에서 공직공무원이 위원단에 참여하거나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제공되는, 회의에 참석한 공직공무원 관리의 식비, 교통비, 숙박비 및 예정된 접대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



- (5) 자선, 문화 또는 정치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교육위원회 의원에게 티켓을 선물하거나 무료입장권을 제공하는 경우 (선물 또는 입장권의 목적이 교육위원회에게 제공되는 의례 또는 의전인 경우);
- (6) 특정 선물 또는 선물 종류를 수락하는 것이 학교 시스템 또는 교육위원회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해를 끼치지 않으며 선물의 성격이 순수하게 개인적이고 사적인 것이라는 서면 조사 결과에 따라 위원단이 이 하위 섹션의 운영에서 면제하는 특정 선물 또는 선물 종류;
- (7) 혈연 또는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공직공무원의 가족 구성원인 기타 개인으로부터의 선물; 또는
- (8) 사례금 제공이 해당 공직공무원의 학교 시스템 또는 교육위원회 직책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연설 또는 회의 참여에 대한 사례금.

e) 위의 6.d 항은 다음과 같은 선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1) 수령하는 공직공무원의 공정성과 판단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경향이 있는 선물;
- (2) 공직공무원의 공정성 및 독립적 판단을 손상시키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는, 상당한 가치가 있는 것; 또는
- (3) 수령 공직공무원이 공직공무원의 공정성과 독립적 판단을 저해하기 위해 고안되었다고 믿거나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상당한 가치의 물품.

## 7. 비밀정보의 공개

- a) 공직공무원 또는 전직 공직공무원은 공무 수행 외에 공직공무원의 공적 지위 또는 전직 공적 지위로 인해 취득한 기밀 정보로서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자신 또는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공개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b) 공직공무원 또는 직원은 본 정책의 잠재적 위반 가능성을 보고하거나 조사에 참여한 개인에 대해 보복해서는 안 됩니다.

8. 납품

- a) 특정 선발, 입찰에의 초대 또는 구매, 조달을 위한 제안 제출의 요청에 따라 교육구 또는 교육위원회를 돕는 개인 또는 개인에 고용된 사람은, 입찰 또는 제안을 제출하는 사람을 돕거나 대표하거나 직접 또는 간접으로도 입찰 또는 조달을 위한 제안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 b) 위원단은 조달청에서 요청하는 설명 문헌, 단독 조달 및 서면 의견 제공에 대해 이 섹션의 요건에서 예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E. 재산공개 서류-일반 규정

1. 공문서

- a) 위원단은 이 항목 하에 제출된 모든 재산공개 서류를 관리해야 합니다.
- b) 위원단 정상 근무 시간 동안, 교육위원회가 정한 합리적인 수수료와 행정 절차에 따라 일반인이 재무 공시 명세서를 검토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 c) 만약 재산공개를 개인이 검토하거나 복사할 경우, 위원단은 다음을 기록해야 합니다—
  - (1) 내역서를 검토하거나 복사하는 개인의 이름과 집 주소; 그리고
  - (2) 재무 공시 명세서가 검토되거나 복사된 사람의 이름
- d) 재산공개를 복사 또는 검토받은 사람의 요청에 따라, 위원단은 재산 공개를 검토한 개인의 이름과 주소의 사본을 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e) 2019 년 1 월 1 일 이후에 제출한 서류의 경우, 위원단은 개인이 집주소로 지정한 개인의 주소를 공개하도록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f) 교육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지정한 사무소는 다음 기관으로부터 받은 것 관련 정보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 (1) University of Maryland 의료시스템

- (2) 주 정부 또는 주 내 지방 정부의 정부 기관, 또는
- (3) 주 또는 해당 주에 있는 지방 정부의 준정부 기관

2. 보유 요청

위원단은 재산공개 양식을 받은 후부터 4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3. 위원단의 검토

위원단은 이 정책에 따라 제출한 재산공개 양식을 검토해야 하며, 누락 또는 결여된 서류를 제출한 개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준수하지 않은 증거는 위원단이 추적해야 합니다.

**F. 재무 공시 명세서 - 특정 MCPS 관계자 및 직원**

1. 의사결정 권한이 있거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한이 있는 사람의 주요 자문역할을 하는 MCPS 공직공무원과 직원은, 어느 회계연도에서나, 본 섹션에 명시된 대로 재정 공개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a) 학교 시스템 또는 교육위원회 정책 수립
- b) 준 사법, 규제, 라이스, 검사 또는 감사 기능 행사
- c) 한 회계 연도에 총액이 10만 달러에 달하는 다음과 같은 품목을 학교 시스템에 임대, 구매 또는 임대를 위탁할 권한이 있는 사람, 또는 그러한 품목의 준비, 승인 또는 감사:
  - (1) 개인 서비스의 계약
  - (2) 재료, 물품, 설비 명세
  - (3) 제안 또는 입찰 요청

2. 제출 마감일

a) F.1 항에 명시된 MCPS 공직공무원과 직원은 직전 연도에 재직했거나 재직 중인 매년 4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재정 공개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b) 재무 공개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직책의 공석을 메우기 위해 임명되었으나 아직 재무 공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공무원은 임명 후 30 일 이내에 직전 연도에 대한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c) 사망 이외의 이유로 재산공개가 요구되는 사무실을 떠나는 경우, 사무실을 떠난 후 60 일 이내에 재산공개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공개서는 사무실을 떠나기 전 년의 재산공개서를 이미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의 달력연도와 현 달력연도를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3. 특정 MCPS 공직공무원과 직원에 대한 정보공개서 내용

- a) 재정 공개 명세서는 MCPS 공직공무원이나 직원에게 다음을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 (1) 외부 고용;
  - (2) 모든 이해 충돌; 그리고
  - (3) 선물 기부자의 이름 및 수령 시점의 대략적인 소매 가치를 포함하여, 직전 연도에 교육위원회 또는 학교 시스템과 계약하거나 그 권한 하에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받은 선물.
- b) 이 섹션에 따라 사업자명을 공개해야 하는 개인은 해당 사업자가 거래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다른 이름도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 c) University of Maryland 의료 시스템, 주 또는 지방 정부 또는 준정부 기관과의 관계.
  - (1) 개인은 다음과의 재정적 또는 계약적 관계를 공개해야 합니다—
    - (a) University of Maryland 의료시스템;
    - (b) 주 정부 기관 또는 주 내 지방 정부; 또는
    - (c) 주 또는 해당 주에 있는 지방 정부의 준정부 기관.

- d) 보고된 각 재무 또는 계약 관계에 대한 일정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1) 관계에 대한 설명;
  - (2) 관계의 주제; 그리고
  - (3) 대가
- e) 이 양식은 위원단에게 위원단이 선서 또는 지지를 통해 승인한 양식에 제출해야 합니다.

4. MCPS 공직공무원이나 직원은 직원이나 공직공무원이 제안한 특정 행동과 관련하여 이해충돌 또는 잠재적 이해충돌을 일으키는 제삼자와의 이해관계 또는 고용관계를 행동에 앞서 충분히 공개하여 대중에게 적절히 공개해야 합니다.

**G. 재무 공시 명세서 - 교육위원회 의원 및 후보자**

- 1. 이 항목은 모든 교육위원회 의원과 후보자에 해당합니다.
- 2. 제출 마감일
  - a) 교육위원회 의원 직전 연도의 재무 공개 명세서("명세서" 또는 "재산공개서")를 선서 또는 확인을 통해 위원단이 승인한 양식에 따라 매년 4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위원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b) 교육위원회 의원 입후보자
    - (1) 보고 기간 동안 이 섹션의 다른 조항에 따라 재산공개서를 제출한 공직공무원을 제외하고, 교육위원회 의원이 되고자 하는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증을 제출한 해부터 선거가 실시되는 해까지 재산공개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2) 교육위원회 의원이 되려는 후보자는 이 섹션에 따라 요구되는 재산공개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a) 후보자 등록증을 제출한 해에, 늦어도 후보자 등록증 제출일 이전까지. 이 재산공개서는 후보자 등록증과

함께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거나 후보자 등록증을 제출하기 전, 위원단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b) 선거가 있는 해의 경우, 4월 30일 또는 후보 사퇴 마감일 둘 중 더 이른 날짜 또는 그 이전에 이 재산공개서를 위원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c) 진술서가 필요한 다른 모든 해의 경우, 이 진술서는 4월 30일 이전에 위원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서류제출의 불시행

- (a) 후보자가 제출해야 하는 재산공개서 제출 기한이 만료되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미제출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은 후 8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후보자가 후보직을 사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b) 선거관리위원회는 섹션 G에 따라 요구되는 재산공개서가 올바른 형식으로 제출되지 않은 경우, 입후보 증명서를 수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이 항목 하의 서류 제출 30일 이내에, 선거위원회는 위원단 또는 위원단이나 교육위원회가 지정한 사무실에 서류를 전합니다.

c) 직위 임명

교육위원회의 공석을 채우기 위해 임명되었으나 아직 재산공개서를 제출하지 않은 공직공무원은 임명 후 30일 이내에 이전 해의 재산공개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d) 직위 사임

사망 이외의 이유로 교육위원회 의원을 사임하는 경우, 사임 후 60일 이내에 재산공개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공개서는 사무실을 떠나기 전 해의 재산공개서를 이미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 달력연도와 현 달력연도를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3. 교육위원회의 학생 의원(SMOB)은 MCPS 중고등학생이 선출됩니다. SMOB

임기는 7 월 1 일부터 6 월 30 일까지 1 년입니다. 선거 결과 발표일로부터 달력으로 30 일 이내에, SMOB 는 재무 공개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G.4. 섹션에 설명된 대로). 이전 해부터 위원단으로 선출된 날까지의 기간에 적용됩니다. SMOB 는 선출일로부터 SMOB 임기 만료일까지의 재무 공개 명세서를 SMOB 임기가 종료되는 해의 6 월 30 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4. 교육위원회 의원 및 후보자를 위한 재무 공개 명세서 내용

- a) 교육위원회 위원과 후보자는, 선서 또는 확인 하에, 위원단의 승인을 받은 재무 공개 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과 같은 부동산 관련 이해관계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 항목에 해당하는 서류에는 모든 위치의 부동산에서의 모든 이자 명세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에서의 각 이자의 명세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1) 부동산의 성격과 거리 주소로 기재된 위치, 우편 주소, 또는 부동산의 법적 설명.
- (2) 이자에 대한 조건 및 담보 포함, 보유 이자의 성격 및 범위;
- (3) 지분을 취득한 날짜, 취득 방법 및 취득한 사람의 신원;
- (4) 지분에 대한 대가로 제공된 대가의 성격과 금액, 또는 매입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 당시 지분의 공정 시장 가치;
- (5) 보고 기간 중 언제든지 지분의 전체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지분에 대한 설명, 지분에 대해 받은 대가의 성격과 금액, 지분을 양도한 사람의 신원; 그리고
- (6) 해당 부동산에 이해관계가 있는 기타 모든 사람의 신원.

- b) 법인과 파트너십에서의 이자

이 항목 하에 제출한 서류에는 주식회사 또는 조합이 교육구 또는 교육위원회와 사업 여부에 상관 없이, 기업, 조합, 유한책임 조합(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또는 유한책임주식회사(limited

liability corporation)의 모든 이자지급명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항목에서 보고한 각 이자명세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1) 법인, 합명회사, 합자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주된 사무실의 이름과 주소;
- (2) 이자에 대한 조건 및 담보권을 포함하여 보유한 이자의 성격과 금액;
- (3) 보고 기간 중 언제든지 이자의 전체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이자에 대한 설명, 이자에 대해 받은 대가의 성격 및 금액, 아 경우, 또한 이자를 양도한 사람의 신원; 그리고
- (4) 보고 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이자와 관련하여—
  - (a) 지분을 취득한 날짜, 취득 방식 및 취득한 사람의 신원; 그리고
  - (b) 지분에 대해 제공된 대가의 성격과 금액, 또는 매입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 당시 지분의 공정 시장 가치.
  - (c) 개인은 이 문장 2.b)(2) 하의 이자 금액을 보고하는 것으로 달러 금액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i) 법인에 대한 지분의 경우, 보유 주식 수, 그리고 해당 법인의 주식이 공개적으로 거래되지 않는 한, 보유 지분 비율; 또는
    - (ii) 파트너십 지분의 경우, 보유한 지분 비율

c) 교육구 또는 교육위원회와의 사업을 통한 기업체에서의 이자

이 섹션 G에 따라 제출된 명세서에는 G.4에 따라 보고된 이해관계를 제외한 학교 시스템 또는 교육위원회와 거래하는 사업체의 모든 이해관계에 대한 일정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보고된 각 이해관계에 대해 일정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1) 사업체의 주된 사무실의 이름과 주소;



- (a) 이자에 대한 조건 및 담보권 포함하여, 보유 이자의 성격과 금액
- (b) 보고 기간 중 언제든지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지분에 대한 설명, 지분에 대한 대가로 받은 대가의 성격과 금액, 아는 경우, 지분을 양도한 사람의 신원; 그리고
- (c) 보고기간 동안 이자 취득에 관해—
  - (i) 지분을 취득한 날짜, 취득 방식 및 취득한 사람의 신원; 그리고
  - (ii) 지분에 대한 대가로 제공된 대가의 성격과 금액, 또는 매입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 당시 지분의 공정 시장 가치

d) 선물

이 섹션에 따라 제출하는 명세서에는 학교 시스템 또는 교육위원회와 거래하는 개인 또는 카운티 또는 지방 법인을 대표하는 업무에만 종사하는 협회 또는 협회를 대신하여 활동하는 단체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해당 연도 동안 받은 20 달러를 초과하는 선물, 또는 총 100 달러 이상의 일련의 선물에 대한 각 선물 일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본 섹션 G.4.d 에 따라 보고된 각 선물에 대한 일정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1) 선물의 성격과 가치에 대한 설명; 그리고
- (2)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선물을 제공한 사람 또는 대신하여 제공한 사람의 신분

e) 교육구 또는 교육위원회와의 사업을 통한 기업체에의 고용 또는 이자

이 항목 하에 제출한 서류에는 모든 사무실, 관리자, 보고 시기 동안, 교육구 또는 교육위원회와 어떠한 형태로든 사업을 하는 개인, 개인의 직계가족에 의한 유급 고용의 모든 명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항목의 각 직위의 보고의 명세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1) 사업체의 주된 사무실의 이름과 주소;

- (2) 보유한 직책, 책임자 또는 급여 고용의 직책과 성격 및 시작 날짜; 그리고
- (3) 본 정책의 섹션 C.4에 명시된 세 가지 '사업 진행' 범주 중 하나 이상을 확인하여 해당 단체가 관여하는 각 학교 시스템 또는 교육위원회의 부 이름

f) 개별 교육구 또는 부서와의 사업 또는 규정에 따라 사업을 하는 기업

섹션 G에 따라 제출된 명세서에는 개인 또는 개인의 직계 가족이 부채의 원인이 된 거래에 관여한 경우, 보고 기간 중 언제든지, 해당 개인의 학교 시스템 단위 또는 부서와 거래하거나 규제를 받는 사람에 대한 모든 부채(소매 신용 계좌 제외)의 일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항목에서 보고한 각 부채의 경우, 명세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1) 채무를 지게 된 사람의 신원 및 채무를 지게 된 날짜;
- (2) 보고 기간 말 기준, 지불해야 할 부채 금액;
- (3) 부채의 지급 조건 및 연도 중 부채의 원금 증가 또는 감소;
- (4) 해당하는 경우, 책임에 대한 보증금;

g) 교육구 또는 교육위원회에의 고용

이 섹션 G에 따라 제출된 명세서에는 보고 기간 중 언제든지 학교 시스템 또는 교육위원회에 어떤 명목으로든 고용된 교육위원 또는 후보자의 직계 가족에 대한 일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h) 취득한 수입 자원

- (1) 이 섹션 G에 따라 제출된 명세서에는 보고 기간 중 언제든지 개인 또는 개인의 직계 가족 구성원이 단독 또는 부분 소유주였으며, 개인 또는 개인의 직계 가족 구성원이 근로 소득을 받은 각 사업체의 이름과 주소 일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2) 미성년자의 고용 또는 사업 소유는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구가 규제 또는 권력을 휘두르지 않거나 고용 또는 미성년자의 사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지 않을 경우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 (3) 2019 년 1 월 1 일 이후의 기재된 서류의 경우, 만약 개인의 배우자가 교육위원회가 규정한 로비스트일 경우, 개인은 로비활동 목적을 위해 배우자와 연결되어 있는 독립체를 공개해야 합니다.
  - i) 이 섹션에 따라 사업체 이름을 공개해야 하는 개인은 해당 사업체가 거래하거나 사업 중인 다른 이름을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 j) University of Maryland 의료 시스템, 주 또는 지방 정부 또는 준정부 기관과의 관계.
    - (1) 개인은 다음과의 재정적 또는 계약적 관계를 공개해야 합니다—
      - (a) University of Maryland 의료 시스템;
      - (b) 주 정부 기관 또는 주 내 지방 정부; 또는
      - (c) 주 또는 해당 주에 있는 지방 정부의 준정부 기관.
    - (2) 보고된 각 재정적 또는 계약적 관계에 관한 일정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a) 관계에 대한 설명,
      - (b) 관계의 주제, 그리고
      - (c) 대가
  - k) 이 섹션 G 에 따라 제출된 명세서에는 명세서를 작성하는 개인이 공개하고자 하는 추가 이해관계 또는 정보에 대한 일정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5. G 2 항의 목표에 따라본 정책의 (a), (b) 그리고 (c)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해관계는 진술하는 개인의 이해관계로 간주됩니다:

- a) 개인의 직계 가족이 소지하는 이자. 만약 이자가 보고한 시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개인에게 영향을 줄 경우.
  - b) 해당 기간 동안 언제든지, 다음 중 하나에 의해 보유되는 이자—
    - (1) 해당 개인이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사업체;
    - (2) 이 하위 섹션의 (1)항에 설명된 사업체로, 해당 사업체가 25 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
    - (3) 이 하위 섹션의 (2)항에 설명된 사업체로, 해당 사업체가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 그리고
    - (4) 개인이 직간접적으로 한 사업체 또는 다른 사업체의 지분을 합쳐서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체
  - c) 보고시간 동안, 신탁 또는 소유지로의 이자—
    - (1) 개인이 회귀 지분을 보유했거나 수익자였던 경우, 또는
    - (2) 취소 가능한 신탁이라면 개인이 설정자인 경우
6. 이 섹션에 명시된 재무 공개 조항 외에도, 교육위원회 의원과 후보자는 예상되는 조치에 앞서 대중에게 적절히 공개될 수 있도록 해당 인사가 제안한 특정 조치와 관련하여 이해 상충 또는 잠재적 이해 상충을 야기하는 모든 이해관계를 공개하는 명세서를 위원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H. 로비활동의 공개**

- 1. 자신, 사업체,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공식 업무 수행에 있어 해당 단체나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교육위원회, MCPS 공직공무원 또는 직원과 소통하는 사람, 그리고 그러한 의도와 관련하여 교육위원회 위원이나 교직원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 본 정책에 정의된 선물이나 일련의 선물에 연간 500 달러를 초과하여 지출하거나 합리적으로 지출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은 처음 참석한 후 5 일 이내에 윤리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 2. 자신, 사업체,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한 명 이상의 교육위원회 위원이나 MCPS 교직원과 소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식적인 조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MCPS 공직공무원과 소통하도록 권유하는 사람, 그리고

이러한 목적으로 한 해에 300 달러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는 사람은 이러한 자금을 지출한 후 5 일 이내에 위원단에 등록해야 합니다.

3. 등록 명세서에는 로비스트와 로비스트가 대리하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등록자가 교육위원회, MCPS 공직공무원 또는 직원 앞에 출석한 주제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등록 서류는 달력연도 동안에 말은 로비활동을 포함해야 합니다.
4. 이 섹션 H에 따라 위원단에 등록된 사람은 연도 종료 후 30 일 이내에 학교 관계자에게 제공한 선물의 가치, 날짜 및 성격을 공개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 불 가치의 선물이 달력연도 내에 500 불을 넘을 경우, 등록자는 이를 받은 학교 공직공무원의 이름을 공개해야 합니다.
5. 본 섹션 H에 따라 위원단에 등록된 개인 정보는 본 정책의 E. 1. 섹션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한 공공 기록으로 위원단에 의해 관리됩니다.
6. 이 항목 요건에는 다음 행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a) 이 서비스가 로비활동이 아닌 교육위원회의 제안 또는 유보된 시행에 대하여 의뢰인으로 자문과 의견 표현을 제공하는 전문적 서비스일 경우..
  - b) 개인 또는 단체가 교육위원회 조치의 통과 또는 부과 관련하여 추가 또는 기타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교육위원회의 구체적인 초청 또는 요청에 따른 위원회 출석.
  - c) 해당 개인 또는 단체가 학교 시스템 또는 교육위원회의 조치의 통과 또는 부결과 관련하여 더 이상 또는 다른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해당 단위의 특정 초청 또는 요청에 따라 학교 시스템의 조직 단위 앞에 출석.
  - d) 다른 단체를 대표하지 않고 주 또는 주의 정치적 부문 또는 미국의 정식으로 선출되거나 임명된 공직공무원 또는 직원의 공식 업무의 일부로 출석.
  - e) 언론,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발행인 또는 실무자가 일반 대중에게 뉴스를 전파하거나 편집 논평을 하는 통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개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나 단체의 고용주의 경제적, 사업적 또는

직업적 이익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추가 또는 기타 로비에 관여하지 않는 행위.

- f) 해당 개인이 다른 로비 행위를 하지 않고 로비스트의 요청에 따라 증언하는 개인 또는 단체임을 교육위원회에 통지하는 경우. 등록된 로비스트의 구체적인 초청 또는 요청에 따른 개인의 위원회 출석.
- g) 개인 또는 단체가 다른 로비 행위를 하지 않고 해당 개인 또는 단체가 로비스트의 요청에 따라 증언하는 것임을 해당 기관에 알린 경우, 등록된 로비스트의 구체적인 초청 또는 요청에 따라 교육위원회 또는 학교 시스템의 조직 단위에 출석.
- h) 기관의 교리 적용을 위해 기관의 소속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실제 종교단체가 단독적으로 대표하는 경우.
- i) 협회의 임원, 이사, 회원 또는 직원의 공식 업무의 일환으로 다른 단체를 대표하지 않고 카운티 및 지방 자치 단체를 위한 로비 업무에만 종사하는 경우.

**I. 예외와 조정**

위원단은 본 장의 목적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 조항의 적용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 직원(교육위원회 의원은 제외)에게 본 정책의 D 항 및 F 항에 대한 면제 및 변경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1. 불합리적인 사생활 침해의 경우,
2. 공공 서비스에 대한 자격을 갖춘 사람의 유용성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3. 이 정책에 따라 보존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J. 윤리 위원단**

1. 교육위원회에서 임명하는 5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Montgomery County 교육위원회 윤리 패널(Panel-위원단)이 있습니다.
2. 회원의 임기는 3 년으로 하며, 매년 최소한 한 명의 회원의 임기가 만료되어야 합니다.

3. 위원단 위원은 현직 교육위원회 위원, MCPS 공직공무원 또는 직원, 교육위원회의 권한을 받는 사업체에 고용된 사람, 또는 그러한 사람의 배우자가 될 수 없습니다.
4. 위원단은 위원장을 위원회 의원 중에서 선임해야 합니다.
  - a) 위원장의 임기는 1년입니다.
  - b) 위원회장은 재임할 수 있습니다.
5. 위원단은 윤리담당관(ethics officer)이 정책의 특정 책임을 유지하는 것을 도와야 하며 교육위원회는 교육감과의 상의하에, 위원단에게 필요한 법적, 기술적, 행정적 도움이 제공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6. 교육위원회는 이 정책의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이 이 정책의 범위 내에서 잠재적인 이해 상충 또는 기타 문제에 대해 위원단의 의견을 구할 것을 권장합니다.
7. 위원단은 이 정책의 해석을 책임지는 자문단이며 개인에게 이 정책의 적용에 관한 자문을 합니다.
8. 위원단은 이 책의 목적과 실행에 관한 공공 정보와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합니다.
9. 위원단은 본 정책에 따라 모든 사람이 제출한 모든 재무 공시 명세서의 관리인이 되며, 본 정책에 따라 해당 서류에 대한 대중의 접근 권한을 제공해야 합니다.
10. 자문 의견의 요청
  - a) 교육위원회나 MCPS 공직공무원, 직원, 또는 본 장의 적용을 받는 모든 이는 본 정책의 적용과 관련하여 위원단에 자문 의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b) 위원단은 자문 의견 요청에 즉시 응답해야 하며, 제공되거나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사실을 바탕으로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본 정책에 대한 해석을 제공해야 합니다.

- c) 공공 기록에 관한 해당 주 법률에 따라 위원단은 대상자의 신원이 제거된 자문 의견의 사본을 공개하거나, 또는 기타 방법으로 대중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11. 이의제기/고발 접수

- a) 누구든, 위원단의 이 정책 수행의 위반에 관해 이의제기/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 b) 이의제기/고발은 서면과 선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 c) 위원단은 교육위원회의 법률 고문 또는 교육위원회가 조사와 검토를 의뢰한 법률 고문에게 이의제기/고발을 제출합니다.
- d) 위원단이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될 만한 사실관계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단은 불만 사항을 기각합니다.
- e) 위반이 발생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불만 제기 대상자에게 청문회 기회가 주어지며, 청문회는 위원단이 진행합니다.
  - (1) 응답자는 청문회 전에 위원단과 합의 또는 해결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 만약 위원단이 제안한 합의 또는 회복이 이 정책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여길 경우, 위원단은 교육위원회에 이 합의 또는 해결안을 받아들이기를 추천합니다.
  - (3) 만약 교육위원회가 위원단의 추천 제안에 동의할 경우, 교육위원회는 제안한 합의 또는 해결안을 받아들입니다.
- f) 청문회를 통한 위원단의 위반 사항 발견에는 발견한 사실과 법적 결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g) 특정한 문제에 대해 조언견해를 제공하는 전문가 모임인 위원단은 찾아낸 점과 권고 행동을 교육위원회에 보고합니다.
- h) 만약 교육위원회가 발견한 위반행위에 동의할 경우, 교육위원회는 정책이 제공하는 제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 i) 교육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의제기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 (1) 위원단의 권고에 따라; 또는
- (2) 교위원회가 위원단의 위반 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j) 이의제기를 제출한 후, 교육위원회의 최종결정까지, 이의제기에 관련된 모든 행위는 보안을 유지해야 합니다. 법에서 달리 금지하지 않는 한, 위원단의 위반 판정에 대한 위원단의 동의는 공개 정보입니다.
- k) 만약 교육위원회 의원이 위원단에 이의제기를 할 경우, 교육위원회 의원은 이 이의제기를 위한 위원회 심사에 참석하거나 투표하지 않습니다.

12. 제재/처벌

- a) 교육위원회 위원, MCPS 공직공무원, 또는 직원이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주석된 메릴랜드*, *교육법*(아래 인용)의 조항이나 교육위원회의 정책에 따라 해임, 징계, 또는 기타 인사 조치의 사유가 됩니다.
- b) 이 정책의 로비 조항을 위반한 개인 또는 기관은 공개적으로 이를 알리고 법에 지정된 바에 따라 벌칙을 받게 됩니다.

**K. 바라는 결과**

MCPS 는 정기적이며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윤리기준을 유지합니다. 관리자, 교사 및 지원 직원을 포함하여 이 정책의 적용을 받는 모든 개인은 최고 수준의 윤리 기준을 철저히 이해하고 완전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윤리 강령인 정직, 진실, 책임, 시민정신은 MCPS 의 모든 활동의 중심에 있으며, 가능한 최대한 적용하고 있습니다.

**L. 전략의 시행**

MCPS 의 윤리 담당관의 위치는 이에 의해 책정된 바와 같습니다. 윤리 담당관은 교육위원회에 직접 보고합니다. 윤리 담당관은 위원단의 업무를 지원하고 촉진하며 윤리 및 이해충돌에 관한 모든 MCPS 활동을 이행하기 위한 리더십을 제공합니다.

**M. 검토와 보고**

이 정책은 교육위원회의 정책평가 절차에 따라 검열을 받습니다.

관련 자료:

Annotated Code of Maryland, General Provisions Article §§ 5-205, 5-206, and 5-815—5-820, and Appendix A, under Code of Maryland Regulations, Board of Education Ethics Regulations

**정책 역사:** 결의번호 1003-83, 1983년 12월 13일, 결의안에 따른 수정 번호 203-84, 204-84, 205-84, 206-84, 207-84, 1984년 3월 13일; 결의안에 따른 재구성 번호 333-86, 1986년 6월 12일 결의안 번호 458-86, 1986년 8월 12일, 결의안에 따른 채택 번호 550-88, 1988년 10월 24일, 결의안에 따른 수정 번호 209-96, 1999년 3월 22일; 결의안을 반영한 개정 번호 314-03, 2003년 6월 10일; 결의안에 따른 수정 번호 442-12, 2012년 10월 9일; 결의안 제 249-19 호로 개정, 2019년 4월 9일; 결의안 제 호로 개정. 175-23, 2023년 4월 20일.

# MCPS 차별금지 성명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는 인종, 민족, 피부색, 조상, 출신국, 국적, 종교, 이민상태, 성, 성별, 성 역할, 성 표현, 성 취향, 가족 형태/부모 상태, 결혼 상태, 나이, 능력 상태(인지, 사회/정서, 신체), 빈곤, 사회경제적 상태, 언어, 또는 합법적이고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성향 또는 소속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차별은 우리 모두를 위한 형평성, 포용성, 수용을 창출, 육성 및 촉진하려는 우리 커뮤니티의 오랜 노력을 약화시킵니다. 교육위원회는 증오를 조장하고 학교 또는 교육구 운영 또는 활동에 상당한 방해로 일으킬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언어의 사용과/또한 이미지와 표시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교육위원회 정책 ACA, 차별금지, 평등 및 공평과 문화적 능력(Nondiscrimination, Equity, and Cultural Proficiency)을 봅시다. 이 정책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중요하며 특히, 개인의 실제 또는 여겨지는 인적 특성으로 교육적 결과를 예측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위원회의 신념을 단호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또한, 공평성이 내재적 편견, 정당화되지 않은 다른 관행, 교육과 고용의 기회의 평등을 저해하는 구조적, 제도적 장벽을 식별하고 해결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MCPS는 또한, 보이스카우트/걸스카우트와 다른 지정된 청소년 그룹에 평등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MCPS 학생*에 대한 질문 또는 불평사항*	MCPS 교직원*에 대한 질문 또는 불평사항*
Director of Student Welfare and Compliance Office of District Operations Student Welfare and Compliance 850 Hungerford Drive, Room 55, Rockville, MD 20850 240-740-3215 SWC@mcpsmd.org	Human Resource Compliance Officer Office of Human Resources and Development Department of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 45 West Gude Drive, Suite 2500, Rockville, MD 20850 240-740-2888 DCI@mcpsmd.org
<b>1973년 504 장애법(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 에 따라 조정이 요구되는 학생용</b>	<b>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따라 조정이 요구되는 교직원용</b>
Section 504 Coordinator Office of School Support and Well-being Office of Well-being, Learning and Achievement 850 Hungerford Drive, Room 257, Rockville, MD 20850 240-740-5630 504@mcpsmd.org	ADA Compliance Coordinator Office of Human Resources and Development Department of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 45 West Gude Drive, Suite 2500, Rockville, MD 20850 240-740-2888 DCI@mcpsmd.org
<b>학생 또는 교직원*에의 성희롱 등, Title IX에 해당하는 성차별에 관한 조사나 불평사항</b>	
Title IX Coordinator Office of District Operations Student Welfare and Compliance 850 Hungerford Drive, Room 55, Rockville, MD 20850 240-740-3215 TitleIX@mcpsmd.org	

\*차별에 관련된 민원은 다음과 같이 다른 기관에 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 Baltimore Field Office, GH Fallon Federal Building, 31 Hopkins Plaza, Suite 1432, Baltimore, MD 21201, 1-800-669-4000, 1-800-669-6820 (TTY); Maryland Commission on Civil Rights (MCCR), William Donald Schaefer Tower, 6 Saint Paul Street, Suite 900, Baltimore, MD 21202, 410-767-8600, 1-800-637-6247, [mccr@maryland.gov](mailto:mccr@maryland.gov); 또는 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for Civil Rights (OCR), The Wanamaker Building, 100 Penn Square East, Suite 515, Philadelphia, PA 19107, 1-800-421-3481, 1-800-877-8339 (TDD), OCR@ed.gov, 또는 [www2.ed.gov/about/offices/list/ocr/complaintintro.html](http://www2.ed.gov/about/offices/list/ocr/complaintintro.html).

\*\*본 통지는 개정된 연방 초등 및 중고등 교육법을 준수합니다.

안내서는 영어 이외의 언어와 미국 장애인 복지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따른 대체 형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MCPS Office of Communications, 전화번호 240-740-2837, 1-800-735-2258 (Maryland Relay) 또는, [PIO@mcpsmd.org](mailto:PIO@mcpsmd.org)로 연락하여 요청합니다. 수화 통역 및 기타 특수 보조 등의 제반 시설이 필요한 경우는 MCPS의 Office of Interpreting Services, 240-740-1800, 301-637-2958 (VP) 또는 [mcpsinterpretingservices@mcpsmd.org](mailto:mcpsinterpretingservices@mcpsmd.org) 또는 [MCPSInterpretingServices@mcpsmd.org](mailto:MCPSInterpretingServices@mcpsmd.org)로 연락합니다.